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65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최보윤·최은석・박성민

이만희 • 김소희 • 김선교

김은혜 • 최수진 • 김선민

주진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그 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

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 (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지 예산서에는 장애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장애인지 예산서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3(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 제68조의3"을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 까지"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장애평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장애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

- 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 례)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년도 예산안 및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 등) ①・② (생 략) |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 | ③ |
|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 | |
|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
| 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제73조의4</u> 에 따른 중장기 기 | 2. <u>제73조의5</u> |
| 금재정관리계획 |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④ ~ ① (생 략) | ④ ~ ① (현행과 같음) |
|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 | 제16조(예산의 원칙) |
|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 |
|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 |
| 다.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7.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정 |
| | 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 |
| | 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
| | 한다)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
| | 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
| |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
| | 하여야 한다. |
| <u> <신 설></u> | 제27조의2(장애인지 예산서의 작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의2. (생 략)

<신 설>

10. ~ 16. (생략)

<신 설>

성) ①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예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지 예산서에는 장애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장애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③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장애인지 예산서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장애인지 결산서의 작 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 를 받고 예산이 장애평등을 개 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 애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 ②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
|-------------------|
| 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및 평 |
| 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
| |
| 제68조의2부 |
| <u>터 제68조의4까지</u> |
| |
| |
| |
| |
| |
| |
| 제6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 |
| 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 |
| 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 |
| 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 |
| 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 |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
| 는 장애평등 기대효과, 성과목 |
| 표,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함하 |
| 여야 한다. |
|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 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

1. ~ 6의2. (생 략) <u><신 설></u> 7. (생 략) <u><신 설></u>

|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
| 부서류) |
| |
| |
| |
| |
| |
| |
| |
| |
| |
| |
| <u>.</u> |
| 1. ~ 6의2. (현행과 같음) |
| 6의3.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 7. (현행과 같음) |
| 제73조의4(장애인지 기금결산서 |
| 의 작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
|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
| 수혜를 받고 기금이 장애평등 |
| 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 |
| 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 |
| 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
|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②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
|-------------------|---------------------------|
| | 집행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
| |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 | <u>제73조의5</u>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
| 계획 등) (생 략) | 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 |
| | 승) |